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7. 2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위원회(2007. 6.28)
상정, 심사, 보류

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위원회(2007. 7. 2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과장 이영희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고 마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마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 골자

(1) 설립(안 제3조)

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함

(2) 재단의 사업(안 제4조)

-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
-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
-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(3) 기본재산의 조성(안 제5조)

-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
-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

(4) 임 원(안 제7조)

-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으로 구성토록 함
-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함
-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

(5) 이사회(안 제9조)

-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
-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6) 운영재원(안 제10조)

-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출연금,
재단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함

(7)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(안 제13조)

-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
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
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동 조례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문화
체육센터를 분리하고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들에게 질
높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마포의 문화예술을
진흥시키고 또한 저렴한 대관료 정책을 통한 우수공연물 선정 및
창작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활동 등을 폭 넓게 지원
함으로써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
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당초 건립시 구민회관
겸용으로 건립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문화시설공간으로는 문화재단이
추구하고자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유치하여 공연할 수 있을지
이에 대한 검토와 재단이 설립되면 구의 출연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
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, 또한 인력운영에
있어 공연기획, 무대예술 및 시설분야 등의 전문직은 증가하는 반면
기존의 공단소속 일반관리직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재단설립
으로 인하여 발생될 유휴 인력에 대한 문제점과 독서실 운영, 체육동
분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○ 동 조례안의 조문 중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, 임원의 직무를 규정한 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와 상임이사의 임무, 안 제9조에서는 이사회^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판별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